



국토교통부

국 토 교 통 부

수신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귀하 (우21037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11,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(계산동))

(경유)

제목 서면민원 회신(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 질의)

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, 귀하께서 서면으로 제출한 주택건설기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.

1. 민원요지

- '18.1월 시행된 「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831호)과 관련하여, 불박이가구에 대한 소형챔버법 적용은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시험성적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지, 새로운 소형챔버법에 따라 시험한 불박이 가구 각 시편의 결과가 동 고시 성능기준에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각 시편 결과의 평균값이 동 고시 성능기준에 충족하면 되는지

2. 답변내용

- 불박이가구 성능평가를 위한 소형챔버법(KS M 1998) 시험성적서 사용은 '16.12.6. 개정된 「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」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계획승인신청 또는 착공 시점 등과 관계없이 '18.1.1.부터 적용이 가능하며, 시험방법은 '17.12.29. 개정 고시된 KS M 1998(소형챔버법)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- 대형챔버법(KS I 2007) 시험방법은 가구 구성재에 대한 성능파악이 어려운 문제점 등이 제기되어 불박이가구 오염물질 방출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대형챔버법 뿐만 아니라 소형챔버법도 가능하도록 위와 같이 개정하였으며,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소형챔버법으로 시험한 가구용 구성재 각 시험편은 동 기준 별표 1 및 별표 5 기준에 충족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국토교통부
부장관
국토교통부
국토교통부

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.